

수 원 지 방 법 원

제 3 1 민 사 부

결 정

사      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6카합10231 지위보전가처분  
채   권   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장경옥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

담당변호사 해주희

채   무   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학교법인 고운학원

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(와우리, 수원대학교)

대표자 이사장 쉼서원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태평양

담당변호사 이승철

주      문

1. 채권자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.
2. 채무자는 채권자에게,
  - 가. 이 사건 결정의 교지를 받은 날까지 2016학년도 제2학기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

부 강의를 배정하고,

나. 이 사건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부가 있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아마렌스홀 302-1호 연구실을 배정하라.

3. 채무자는 채권자가 수원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소속 조교수로 근무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채무자는 채권자에게,

가. 제2항 기재 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일당 각 1,000,000원을,

나. 제3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,000,000원을 각 지급하라.

5.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
### 신 청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# 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.

2016. 9. 2.

재판장

판사 하태홍



판사 황인준



판사 인진섭



열람용